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불평등한 한미 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719-894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22-7284)
- ◆주최 : 미군장갑차여성생식인권법국민대책위원회(757-7924),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새길국민경당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불평등한 한미 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피의실
- ◆주관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719-894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522-7284)
- ◆주최 :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법국민대책위원회(757-7924),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

# ‘불평등한 한미 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토론회

### ◆토론회

#### ● 시민단체

-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이장희 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이정희 변호사  
김판태 사무처장

#### ● 정당

-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 개혁국민정당

원희룡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유기홍 정책위원장

#### ● 정부

- 국무총리실
- 외교부 북미국
- 법무부 법무연수원
- 국방부 미주정책과

최종만 외교안보심의관  
조태용 부국장  
성영훈 부장검사  
김광우 과장

### ◆토론회 1

## 한미 SOFA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 방향

###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학장/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소파의 경변적인 문제와 다른나라 소파와 비교.

우리나라 소파는 다른나라 소파와 대등성이

④ 공무 중 재판권이양해준 예가 없다

영어법과 대중법의 차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감정에서

우리문화의 차이 때문.

#### I. 문제제기

#### II. 한미 SOFA의 불평등성

1. 구조적 불평등성
2. 구체적 불평등성

#### III. 미일 SOFA, 독일 보충협정, NATO SOFA와의 비교

1. 인적 적용범위
2.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3.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4. 신병인도 시기
5. 미군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6. 시설 및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 : 위험무기 반입 및 군사훈련 사전 통보, 사전 협의.
7. 영어본 우선

#### IV.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요청사항

1. 정부당국
2. 정치권

#### V.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 I. 문제제기

한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 형사분과위원회를 오늘(12일)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 6월 13일 여중생의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에 대한 무죄평결 이후 한미 양국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취하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알고 지금에서야 사태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매우 주효했다. 무죄평결 이후 즉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하면서, 무죄평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영미 법과 대륙법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였다.

더구나 정부는 한미 SOFA는 다른 나라 SOFA와 대등성이이며, 다른 나라에는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미국은 그 동안 한미 SOFA는 잘 운영되고 있고, 미군 법정은 한국 법정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강변해왔다.

12월 10일 토마스 허바드 주미 대사는 한미 SOFA는 미일 SOFA 및 독일 SOFA를 포함한 다른 나라 SOFA와 완전히 동일하다(completely equal)고 전제하면서, 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 당사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부시 정권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분노와 평화적 광화문 촛불시위가 이유 있는 저항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것은 이 사건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정립해 가는 자연스런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일부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이 '미군철수' 및 '반미주의' 반대라는 명분 하에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더구나 아직도 양국 정부는 한미 SOFA를 개정하지 않고,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 수준에서 운영방안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 SOFA의 전반적 문제점, 일본 SOFA(1960)와 독일 SOFA(1993) 비교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요망 사항, 그리고 SOFA의 구체적 개정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 II. 한미 SOFA의 불평등성

### 1. 구조적 불평등성

####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1966년 체결된 한미 SOFA는 4가지 문서로 구성된다. SOFA 본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가 그것이다. 현재의 독소조항은 66년 네글리지 만들어진 내용인데, 여기 개정과정에

1991년 제1차 개정에서는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양해 전혀 손대지 사항과 교환문서를 양해사항 하나로 합하여, 현재 SOFA는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 못했다. 해사항 총 3가지 문서로 되어 있다.

한미 SOFA의 본협정은 타국과 유사하나, 부속협정(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은 본 협정의 내용을 매우 제한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개정 SOFA도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의 독소조항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오히려 영미법적인 독소조항을 더 첨가하였다. 미일 SOFA, 나토 SOFA 그리고 필리핀 SOFA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부속문서에 담지 않고 있다.

####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한미 SOFA는 2001년 개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 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분하에 지나치게 영미법적 형사소송절차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이번 여중생 압사사건에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주요한 장애가 되었다. 이것은 같은 대륙법국가인 일본 SOFA와 독일 SOFA에는 없다. 이것은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2001년 SOFA 개정시 피의자 신병인도 심점을 종전의 확정 판결에서 기소 이후로 앞당겨주는 대신에 한국측은 지나치게 미군 피의자 인권보호규정을 너무 양보하였다. 특히 SOFA 제22조 합의의사록은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실체적 진실 : 통신장비의 이상 유무에 접근을 못했다. 구조적 제약. 초동수사할 수 없는.

한미 SOFA 제28조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 합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그 구성이 양정부 대표 1명과 그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며, 한국측은 외교통상부가 대표한다. SOFA 규정을 보면, SOFA 운영상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합동위원회가 협의과정의 비공개성과 참가범위의 배타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미간의 주요한 사항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참가자가 정부 해당부처 실무자에만 한정되어,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합동위 산하 분과위에는 반드시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한미 SOFA는 1966년 제정되어 1991년, 2001년 두 번이나 개정 되었다. 그러나 한미 SOFA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난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의 독소조항은 1966년 제정 이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1960년대 냉전시대 한미관계의 시각을 반영한 한미 SOFA는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음을 미국 국무성 Nye 차관보도 1995년 동아시아전략보고서에서 인정한 바 있다.

더구나 한국의 민주적 시민사회와 성장과 사법제도의 발전을 인정하고, 21세기에 걸맞는 한미간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한미 SOFA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4) SOFA의 모범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냉전시대에 제정되어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미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SOFA의 불평등성의 시정은 그 모범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상주병권을 인정한 점, 미군주둔의 목적규정이 결여된 점, 철수에 관한 협의규정이 결여된 점, 주한미군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점, 공동 방위지역이 제한된 점,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규정한 점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포된 조약으로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

에 편중된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상의 평등성과 상호성의 결여는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된 한미군사관계와 지역적 안보체제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sup>1)</sup>

#### 5)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SOFA 본 협정 제5조 1항의 [주한미군주둔경비의 미군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1991년에 부속문서로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무상 토지와 시설외에도 1991년 1억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1년 4억4천400만 달러, 2002년은 10.4% 증가된 4억9천만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했다. 이것은 국방비 증가율보다 높아 분담금 증액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 6)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독일보충 협정 교환각서(1959)에는 미군 주둔 지역의 기지촌 여성보호와 혼혈아 보호를 위한 부양(Maintenance Claim)규정이 있다.

## 2. 구체적 불평등성

주한미군의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과연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번이라도 미군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생 성윤간사건이 터지자 오끼나와 주지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 공식으로 항의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SOFA 신병인도 깃집까지 더욱 앞당기는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군범죄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당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 두 여중생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에서는 명백히 미국의 과실로 어린 딸 2명의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을 우

1) 강병규, “한미군사조약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6권 1호, 1961), 114–123쪽. 이장희, “한미 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SOFA의 시설과 기지조항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제42권 2호, 1996), 147–148쪽.

리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개정 SOFA는 공무중 범죄로 미국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러한 선례가 없다<sup>2)</sup>고 강변하면서 재판권 포기를 미국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SOFA 규정상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SOFA 자체가 불평등하게 미국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미군범죄로부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2001년 개정 SOFA에서 형사관할권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십점 개선과 환경조항 신설이라는 몇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정 SOFA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각 영역에서 '일단' 부분적 개선은 됐으나, 시민단체가 그 동안 주장했던 근본적인 개정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째, 개정 SOFA는 형사관할권 분야에서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종전의 최종판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겨주고 살인과 강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계속 구금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나, 변호사도 아닌 단순한 미군 관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규정, 그리고 기소 후 한국 수사당국의 심문 금지, 형사관할권의 핵심판단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군 장성급으로 한정하는 등과 같은 독소규정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미군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두터운 보호막을 쳤다. 그런데 이런 개정 SOFA의 문제점이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개정 SOFA가 한국의 형사사법주권을 과거 SOFA보다 더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된 것이다.

둘째, 시설 및 구역 분야에서도 근본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시설 및

2) 1957년 1월 30일, 일본 군마현에 있는 미군 연습장 내 출입금지 장소에서 생활고로 탄 피를 줍던 주부 사카이 나카(46)씨가 미국 제1기병사단 8연대의 윌리엄 S.지라드 하사관이 쏜 총탄에 숨졌다. 1957년의 이 '지라드 사건'은 여중생 암사사건과 완전 유사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사건 직후 미군 당국은 공무수행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1차적 재판권을 주장하였다. 당시 미일 SOFA에 따라 공무중범죄라 하더라도 미측이 재판권을 갖되, 다른 나라가 1차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 내에서는 (평시에)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일 SOFA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재판권 포기 주장에 따라 재판권을 일본에 이양하였고, 지라드는 1957년 11월 19일, 일본 법정에서 징년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역의 효력 기간 및 임대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또 위험한 무기반입이나 주요한 군사작전 및 훈련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보조항이 전혀 없다.

이러한 미약한 개정으로는 매향리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일 SOFA 협정, 독일 SOFA 그리고 미필리핀 SOFA는 위험한 무기 반입 시나 군사작전시 반드시 접수국과 사전협의, 통고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민사 청구에서 종전의 복잡한 청구 절차를 송달 절차 마련, 법정 출석, 증거모집 협조, 강제집행 실현절차 마련 등 권리 구체화를 간편하고 구체화한 점은 일부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전 절차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무 행위시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노무 조항에서 종전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임의 해고'에서 '군사상 필요'의 내용을 구체화한 점은 일부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가 배제된 합동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한 점과,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이 무의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미군기지 내 시설건축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미군기지의 반환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개선된 점이다. 그러나 현행 시설 및 구역의 공여, 관리, 반환이 형식적으로는 양국이 합의해서 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측에 의해 정해지거나 비공개의 합동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도록 되어있다.

여섯째, 통관, 관세, 과세, 비세출기관 등에서는 어떤 명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개정해야 할 주요과제와 기간(2001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그것도 협정개정이 아닌 '회의록' 수준에서 합의를 한 데 불과하다.

일곱째, 환경조항의 신설은 최초라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그 내용상 법적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다. 1) 한국 환경법이 미군시설 구역에 적용되는 명문화가 없다. 1993년 개정 독일보충협정은 미군기지 내에서도 독일환경법 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2) 오염 발생시 미군 당국에 긴급조치를 강제하는 의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오염 확산과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긴급 방제조치와 오염원 조사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부담 및 환경오염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4) 정기적인 한국의 환경조사권이 명문화 돼야 한다. 바로 이러한 SOFA 규정상 문제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환경오염과 기름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덟째,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은 폐지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무상사용에 그치지 않고 주둔비용을 방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sup>3)</sup>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조차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1990년 6월에 약속한 것이다.

한미 SOFA 제5조 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는 ‘주둔군 경비 합중국 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미군당국에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87년 당시 19억 6백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sup>4)</sup>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다. 1991년 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관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이하 제1차 방위비 특별 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SOFA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제1조)”, “대한민국은 매 회계년도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하도록(제2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미 SOFA’ 제5조 제1항에 모순되며, ‘한미 SOFA’의 改惡이다.<sup>5)</sup>

이 改惡된 특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지원 비용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조차 방위비 분담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sup>6)</sup> 일본의 경우, 미국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미 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5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뜻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1995년 9월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5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은 3억 달러로 지난 91년의 1억 5천만 달러에 비해 4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3)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대소 강경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988년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방위비 분담』요구를 가시화 시켰다. 김국진,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한국군사』 창간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5. 7), 58쪽 참조.

4)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지원, 운영유지비지원 등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위의 액수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법과 사회연구회』(1988), 105면 참조.

5) 이장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 연구』 제5권 2호 (1998), 5~10쪽 참조(이하 이장희, 방위비 분담, 1998).

6) 강명길, “미군시설 및 기지 사용 문제와 개선 방향”,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 발표문(외교안보연구원, 1995. 6. 21) 참조.

1993년 11월에 94년~95년까지 2년간은 제2차 방위비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2년간(1994~95. 12. 31)은 WBC의 1/3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후 1995년에 제3차 특별조치협정을 맺어 3년간(1996~98. 12. 31)은 INDEX 방식의 전년 대비 매년 10% 증액으로 합의하였다. 1998년에는 향후 1999년 이후 3년간 미국과 새로운 방위비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4억 불 이상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은 1991년 1억 5천만 달러, 1992년 1억 8천만 달러, 1993년 2억 2천만 달러, 1994년 2억 6천만 달러로 해마다 20% 가량 증가해, 95년 분담금은 전체 WBC의 32.2%에 이르는 3억 달러로, 이는 한국 국방비의 2%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3년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총 지원비용은 기지이전비, 카투사 등 인력 및 군수지원비 및 부동산의 무상지원(토지 7,368만 평, 건물 1억 167만 평) 등까지 합치면 실제는 10배가 넘어, 1992년의 경우 25억 4천만 달러, 1993년에는 24억 1천만 달러나 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8% 가량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25억 달러(간접지원 포함하면 33억 7천 불), 독일의 9억 달러(간접지원 포함하면 평균 21억 불)에 비해 예산상 지출은 적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16배인 일본의 76%, 경제력이 4.2배인 독일의 33% 및 NATO 회원국의 25%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세계 최고치에 해당되는 것이다.<sup>7)</sup> 이 사실은 미 국방부가 1993년에 의회에 제출한『방위분담보고서』도 시인했다.<sup>8)</sup>

이미 1995년 6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책검토회의(PRS)에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자국의 국방예산 감축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유로 매년 10%씩 오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올해 방위분담금인 미화 3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6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주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원화로 지급되는 인건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것은 1991년 특별협정 제1조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경비의 일부 부담” 합의와도 크게 모순된다. 미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991년도 기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 8억 4천만 달러의 약 3분의 2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1년에 4억 4천 4백만 달러, 2002년에는 10.4% 증가된 4억 9천만 달러로 확정됐다. 이것은 국방비 증가율보다 높아 분담금 증액폭을

7) 조선일보, 주한미군 50년 연재 11, 1995년 12월 9일자 9쪽 참조.

8)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간접 지원을 합쳤을 때 한국은 동맹국 중에서 지원금액면에서 일본에 이어 2위이며, 능력을 고려하면 우방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미 국방부도 시인했다. 상계서.

##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부동산 무상임대 및 인력지원 등을 감안할 때, 지금도 실질적인 지원비용이 세계 최고치인데, 이것은 우리한테 지나친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 액수에 물가상승 정도를 감안하는 선에서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sup>9)</sup>

우리 정부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1995년 11월 2일 열린 제27차 한미년례안보회의(SCM)에서 1995년 방위비분담 3억 달러를 기준으로 1996~98년까지 3년간 매년 10% 증액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1989년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증액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방위비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토론조차 없었다. 그 이후 지난 1998년 12월 22일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금을 인건비 및 군수지원비 등 2,575억 원은 원화로,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 증강비 등 1억 4,120만 달러는 미화로 지급한다는, 총 3억 3,300만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타결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6% 인상된 것으로서 그 전 해의 인상을 10%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을 ‘한미 SOFA’의 개정, 무역역조, 경수로 지원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와 연계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는 부동산 무상지원을 비롯, 카투사 등 각종 인력지원비,<sup>10)</sup> 면세혜택 등 제반 간접 지원경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방위비 분담금의 산출방식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위비 특별협정에서는 ‘독일보충협정’ 제63조와 같이 한미 양 정부의 부담 경비를 세밀히 구분, 규정하는 것이 미국의 자의적인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종합하면 방위비 부담은 분담국의 능력과 수혜 정도라는 2가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의 GNP와 일본 및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고, 또 탈냉전 후 한반도에 미군의 전쟁억지 능력의 감소라는 구체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과다한 부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홉째, 불평등성을 지닌 SOFA의 모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는 전혀

9) 이장희, 방위비분담, 1998, 10~13쪽 참조.

10) 카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타국에도 그 사례가 없다. 년 5,000명이며, 이 중에는 미군을 대체하는 전투병력도 포함된다. 이것은 미군 병사의 숫자 증원을 줄임으로써 년간 약 1.3억 불의, 미군병사 유지비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시켜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하지 않았다. 1954년 냉전시대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은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개정 SOFA는 본협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1부씩 작성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하였다. 일본 SOFA, 독일 SOFA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 III.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여기에서는 주로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권과 미군기지에 훈련을 중심으로 미일 SOFA(1960), NATO SOFA(1951), 독일 SOFA(1993)와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1. 인적 적용범위

#### A. 공통

Members of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 and their dependents.

#### B. 차이

##### 1) Korea :

- Dependents mean 1) spouse and children under 21 ; 2) parents, children over 21 or other relatives who are dependent for over half their support upon a member of U.S. armed forces or civilian component.

(적용범위가 일본에 비해 넓음)

- Invited Contractors :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such persons for offenses commit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punishable by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cognition of the role of such persons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7(b0 and 9 and the related Agreed Minutes of Article XXII. In those cases in which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decide not to exercise jurisdiction they shall notify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possible. Upon such notification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such jurisdiction over the persons referred to as is conferred on them by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2) Japan : Dependents mean 1) spouse and children under 21 ; 2) parents, children over 21 if dependent for over half their support upon a member of U.S. armed forces or civilian component.

3) German : Dependent means spouse of a member of a force or a civilian component, or a child of such member depending on him or her for support. (Included in Supplement Agreement Article 2: A close relative of a member of a force or of a civilian component who is financially or for reasons of health dependent on, and is supported by, such member, who shares the quarters occupied by such member and who is present in the Federal (German) territory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ities of the force shall be considered to be, and treated as, a dependent.)

#### C : 평가

한미 SOFA의 인적 적용범위가 일본과 독일에 비해 너무 넓다. 한미 SOFA에는 일본 SOFA에 없는 '기타 친척'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도입했고, 본협정 제15조 8항은 초청계약자를 형사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즉 초청계약자는 본협정의 적용대상자는 아니나 대한민국의 공동 방위 역할을 인정하여 SOFA 제22조 체포와 구금에 관한 5항,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제7항(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권리에 관한 9항 및 이에 따른 합의의사록에서는 본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SOFA의 인적 범위가 넓을수록 한국의 형사주권이 좁아지고 주둔군의 주권이 넓어진다.

#### 2.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 A. 공통

- U.S. shall have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offenses solely against the U.S. side or offenses arising out of any act or omission done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y. In other cases, Korean/Japanese/German authorities have the primary jurisdictional rights.

- One side having the primary right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 request from the other for a waiver of its right in cases where the other side considers such waiver to be of particular important.

#### B. 비교

1) Korea : Korean side will, upon a U.S. request, waive their primary right except when they determine that i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at jurisdiction be exercised by Korean side. (제22조 3항 (나) 1 항의 의사록)

2) German : At a U.S. request, the German side shall waive the primary right in cases of concurrent jurisdiction.(독일 보충협정 제19조)

3) Japan : 포기 규정 없음.

4) NATO : 포기 규정 없음

#### C : 평가

미군이 공무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는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고, 다른 상대방은 이것을 '호의적 고려'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미일 SOFA와 NATO에서 공통점이다.

그런데 한미 SOFA는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미일 SOFA와 NATO SOFA에는 없는 점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하다. 이것은 아마도 독일이 2차대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그리고 피점령국가로서의 독특한 지위가 작용된 것 같다.

### 3.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1) Korea : A certificate issued by competent U.S. military authorities stating that the alleged offense arose while on official duty shall be sufficient evidence of the fac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primary jurisdiction.

<양해사항> : A duty certificate shall be issued only upon the advice of a Staff Judge Advocate, and the competent authority issuing the duty certificate shall be a general grade officer. **The certificate will be conclusive unless modification is agreed upon.**(제22조 양해사항 제3항(가))

In those exceptional cases where Korean chief prosecutor considers that there is proof contrary to the certificate, it shall be made the subject of review through discussion between two sides.(제22조 합의의사록 제3항(가))

2) Japan : A certificate issued by or on behalf of his commanding officer stating that the alleged offense, arose while on official duty, shall, in any judicial proceedings, be sufficient evidence of the fact unless the contrary is provided. The above statement shall not be interpreted to prejudice in any way Article 318 of the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Article 318 guarantees a judge's free judgment on the proof of evidence.) (미일 SOFA 제17조 3항 가 ii 합의의사록)

3) German : The highest appropriate U.S. authority may submit to the German court or authority dealing with the case of a certificate (on official duty). The German court or authority shall make its decision in conformity with the certificate.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such certificate may, at the request of German court or authority, be made the subject of review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독일 보충협정 제18조)

#### 4) 평가

- 공무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유효성 판단 주체는 형사재판권 행사주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주요하다. 한미 SOFA의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는 미군 장성급이며, 일선 검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에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처음 증명서가 결정적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한미 SOFA는 공무증명서의 유효성 판단도 사실상 미군장성급이 하게 되어 있다.

미일 SOFA 합의의사록에서는 공무증명서의 발급주체는 “지휘관 및 그 지휘관을 대리한 자”이며, 또 반증이 없어야 하며,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공무 판단 주체가 한미 SOFA 보다 좀 더 구체적이며, 공무의 최종 판단에도 일본 법원도 관여하게 길이트여 있다.

독일 보충협정에서는 파견국의 최고 관계당국이 파견국법에 기초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증명서가 독일 법원과 관계당국의 요구로 쌍방 사이에 토론을 통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한미 SOFA에서는 공무 판단자가 미군 장성급 장교로 포괄적인 점과 그 판단 주체가 사실상 미군 당국이다. 미일 SOFA와 독일 보충협정은 판단 주체가 ‘지휘관 및 그 대리인’, ‘미국 최고 당국자’라고 특정되어 있고, 최종 판단에도 접수국의 법원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 4. 신병 인도 시기

1) Korea : The custody of an accused U.S. member over whom Korea is to exercise jurisdiction shall remain with U.S. until he is indicted by Korea. (2001. 1. 18 amended, 합의의사록) The (U.S.) transfer of custody at the time of indictment or thereafter falls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ases of sufficient gravity to warrant custody and adequate cause and necessity exists for such custody : murder/rape/kidnapping for ransom/trafficking in illegal drugs/manufacturing illegal drugs for the purposes of distribution/arson/robbery with a dangerous weapon/attempts to commit the foregoing offenses/assault resulting in death/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resulting in death/fleeing the crime scene after committing a traffic accident resulting in death/offenses which include one or more of the above-referred offenses as lesser included offenses.

2) Japan : The custody of an accused U.S. member over whom Japan is to exercise jurisdiction shall, if he is in the U.S. hands, remain with the U.S. until

he is charged by Japan.(미일 SOFA 제17조)

3) NATO : The custody of an accused U.S. member over whom the German side is to exercise jurisdiction shall, if he is in the U.S. hands, remain with U.S. until he is charged by the German side. (NATO SOFA 제7조)

4) German : Where custody rests with U.S., it shall remain with the U.S. until release or acquittal by the German side or until commencement of the sentence. The U.S. shall make the arrested person available to the German side for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ceedings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that end and to prevent any prejudice to the course of justice. They shall take full account of any special request regarding custody made by the competent German side. (독일보충협정 제22조 3항)

##### 5) 평가

2001년 개정 한미 SOFA는 피의자 신병 인도식점을 종전의 확정 판결에서 4가지 전제조건하에 기소 이후로 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대신에 한국측은 미군측에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서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양보했다. 이로 인해 기소 이후 신병인도조차도 4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거의 성사된 것이 없고, 설사 신병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소 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미국 대표의 입회 없는 신문의 증거능력 부인 등 독소조항으로 한국 수사 당국의 초동 수사 강화라는 목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실증되었다.

미일 SOFA에서는 기소 이후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군피의자 신병인도가 되고, 1995년 오끼나와 초등생 성윤간 사건을 계기로 미일 합동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 3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이전에도 신병인도가 가능토록 했다.

NATO SOFA도 기소 이후면 무조건 신병인도가 가능하다. 다만 독일보충협정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후에 신병인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미일 SOFA, NATO SOFA, 독일 SOFA에는 신병인도에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다.

##### 5.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 1) Korea :

-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exist from the moment of arrest or detention, and no statement of the accused taken in the absence of such a representative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in support of the guilt of the accused. Such representative shall be entitled to be present at all preliminary investigations, examinations, pretrial hearings, the trial itself and subsequent proceeding, at which the accused is present.(합의의사록 제22조 9항 (사))

- In cases where custody has been reta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under paragraph 2 of the Agreed Minutes re Article XXII, Paragraph 5(c),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shall forgo all questioning of an accused who wants to have counsel present beyond that required to ascertain the status and identity of an accused until counsel is retained and present for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제22조 5항 (다) 7 양해사항)

- In addition to the rights enumerated in items (a) through (g) of paragraph 9 of this article,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civilian component, or a dependent, who is prosecu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 (합의의사록 제22조 9항)

(j) shall not be required to stand trial if he is physically or mentally unfit to stand trial and participate in his defense.

(k) shall not be subject to trial except under conditions consonant with the dignit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cluding appearing in appropriate military or civilian attire and unmanacled.

...

In any case prosecu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is article no appeal will be taken by the prosecution from a judgement of not guilty or an acquittal nor will an appeal be taken by the prosecution from

any judgment which the accused does not appeal, except upon grounds of errors of law.

- Pursuant to Understandings, Paragraph 10, re US-ROK SOFA, Article XXII, Paragraph 5(c), The standards for any facilities for pretrial confinement or restric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10 of Understandings re Article XXII, Paragraph 5(c) shall meet or exceed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Joint Committee, for post-trial confinement facilities as set forth in Agreed View 13, Prompt notice of any transfer between facilities shall be given to the Judge Advocate, United States Forces Korea.(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2호)

2) Japan : 미군 피의자의 권리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영미법적 독소조항은 없음.

3) German : 미군 피의자의 권리조항이 있지만, 한국처럼 영미법적 독소조항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NATO : 미군 피의자의 권리조항이 있지만, 한국처럼 영미법적 독소조항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평가

한미 SOFA의 특색은 미군 피의자에게 영미법적 형사소송절차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였고, 국내법과 달리 많은 특혜를 부여한 데 있다.

그 예로 미군 대표의 부재하에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변호인과 미국 대표의 부재중 피의자에게 신분과 신원확인 이상의 신문 금지, 무죄판결시 검찰의 항소권 제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적절할 때 심판과 출석을 거부할 권리, 미군 위신에 합당하지 않을 때 심판거부권, 행형시설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3호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 일 것 등이다. 이것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피의자 특혜조항이 같은 대륙법 국가인 일본 SOFA 와 독일 SOFA에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6. 시설 및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 : 위험 무기 반입 및 군사 훈련 사전 통보, 사전 협의.

### A. 공통

- Within the facilities and areas, the United States may take all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ir establishment, operating, safeguarding and control. In order to provide access for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o the facilities and areas

for their support, safeguarding and contro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t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nd upon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take necessary measures, within the scope of applicable to, or in the vicinities of the facilities and areas. The United States may als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such purposesd upon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rough the Joint Committee.(본 협정 제3조 1항)

### B. 비교

1) Japan : Major changes in the deployment into Japan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major changes in their equipment, and the use of facilities and areas in Japan as bases for military combat operations to be undertaken from Japan other than those conducted under Article V of the said Treaty, shall subjects of prio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1960년 1월 19일/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German : Insofar as a force is not able to carry out its training program on the accommodation made available for its exclusive use without impairing the purposes of such training, it shall on the basis of this Articl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Federal Minister of Defense, have the right to conduct maneuvers and other training exercises outside such accommodation in such measure as is necessary to the accomplishment of its defense mission. The decision of the Federal Minister of Defense shall be made after giving

due consideration to all aspects arising from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to which the Federal Republic and one or more of the sending States are party, including training requirements laid down by the Supreme Allied Commander in Europe, other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uthorities, or by competent European authorities. The conduct of or participation in maneuvers and other training exercise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by elements of the force which come to the Federal Republic for this purpos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German authorities. The procedures for notification, coordination and authorization of maneuvers and other training exercises shall be regulated in a separate agreement.(1993년 개정 보충협정/Article 45, Para. 1)

- A force shall have, on the basis of this Articl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German authorities, the right to conduct maneuvers and other training exercises in the air space of the Federal Republic in such measure as is necessary to the accomplishment of its defense mission. The decision of the competent German authorities shall be made after giving due consideration to all aspects arising from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to which the Federal Republic and one or more of the sending States are party, including training requirements laid down by the Supreme Allied Commander in Europe, or other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uthorities or by competent European authorities.(1993년 개정 독일보충협정/Article 46/1)

### 3) Philippines :

- The United States shall, subject to previous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have the right to use and costal areas of appropriate size and location for period maneuvers, for additional staging areas, bombing and gunnery ranges, and for such intermediate airfields as may be required for safe and efficient air operations. Operations in such areas shall be carried on with due regard and safeguards for the public safety.(1947년 협정 제6조)

- Consultation : The operational use of United States bases in the

Philippines for milit combat operations, other than thos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Philippines Mutual Defense Treaty and Southeast Asian Collective Defense Treaty, will be the subject of prior consultation with the Govenment of the Phikippines.(필리핀 내 미군 군사기지의 군사 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사용과 군사기지 사용기간 및 종료, 상호방위에 관한 합의각서(1959. 10. 12))

- Operational Use of The bases : Within the context of Philippine sovereignty, operational use of the bases for military combat operatiuons other than thos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hilippine—United State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Southeast Asian Collective Defense Treaty, or the establish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Long—range missiles in the bases,shall be the subject of prio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1979 Amendment to the Military Bases Agreement assuring the United States of unhampered military opertions involving its forces in the Philippines.(필리핀과 미국간의 M.O.A.(1983. 6. 1))

- Access and Information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within a reasonable period,inform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of the current level of the United States forces permanently stationed in the Philippines, and their equipment and weapons system. There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all notify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of any major change in the United States forces permanently ststioned in the Philippines, and major changes in the equipment and weapons systems.(필리핀과 미국간의 M.O.A.(1983. 6. 1))

### 4) 평가

근본적으로 현행 SOFA는 시설과 기지 안에 환경오염과 군사주권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번 한강 핵무기 불법 방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규정의 신설을 포함해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군부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환경오염의 발생지인 시설과 구역 안에서 미군의 관리권(경찰권과 사용권)을 100% 부여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개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시설과 구역의 유효기간의 무기한성은 물론이고 미군 부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과 구역 주변에도 보안조치권을 부여해 미군의 배타적 경찰권과 사용권을 지나치게 확대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필리핀 협정은 시설, 기지 임대기간이 25년이고, 시설, 기지 안에 서의 미군의 위험한 무기반입과 미국의 군사작전은 사전에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미일 협정도 시설구역 유효기간이 10년이며, 미군시설과 구역 안으로의 위험한 무기 반입과 군사작전은 일본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또 독일보충협정은 미군 시설 구역 밖에서 독일 땅에서 군사작전과 기타 훈련시에는 독일 국방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과 일본의 행정협정 모두 시설과 기지 주변에까지 보안조치권을 한미행정협정처럼 지나치게 확대부여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에서 알수 있듯이 현행 SOFA에 따르면 미군의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인근 어장과 농토가 폐허가 되어도 미군기지 안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 독일 보충협정은 미군기지 안에 독일환경법상 환경 기준을 적용해 독일땅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SOFA 개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환경법이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독일 보충협정 제54조와 제64조처럼 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 의무, 한국 환경법규의 기지 내 적용, 환경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결은 환경 조항 신설을 넘어 위험한 무기 반입과 중요한 군사작전 및 군대 병력의 변화를 포함하여 미군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대한 한 국과의 사전협의 의무의 명문화 등에 관한 한미간의 새로운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7. 영어본 우선

1) 한미 SOFA 2001년 개정본에 추가

Done at Seoul 2001.1.18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and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ext shall prevail.

2) 일본 SOFA : 없음

3) NATO SOFA : 없음

4) 독일 SOFA : 없음

5) 필리핀 SOFA : 없음.

6) 평가

SOFA처럼 양국간의 이해가 민감한 주권사항을 다루는 협정은 양국의 정본이 모두 존중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 IV.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요청사항

### 1. 정부 당국의 과제

우선 이번 여중생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에 적극성과 근본적, 구조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여중생 사건에 대해 법 문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법은 상식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여중생 사건 무죄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재판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발 방지책으로서 SOFA의 개정이 아닌, SOFA의 운영 개선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SOFA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법 규범성이 약한 정치적 신의에 기초한 합동위원회 양해사항 수준에서 SOFA의 근본적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는 없다. 미국은 법 규범성이 있는 SOFA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 SOFA는 앞서 일부 비교한 것처럼 일본, 독일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가 타국과 대동소이하다는 언명은 향후

삼가해주길 바란다.

셋째,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SOFA 제28조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 소집을 즉시 요청하여 한국민의 법 감정을 미국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SOFA 개정 협상을 공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혹자는 1년 전인 2001년에 개정했는데,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은 개정 거부 이유가 못된다. 이번 여중생 사건으로 2001년 SOFA 개정시 우려했던 영미법의 독소 조항의 문제점이 모두 실증되었다.

넷째, 정부는 SOFA 개정을 포함한 미군 문제에 대한 폭 넓은 국론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국회,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21세기 바람직한 한미 관계발전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발족시키기 바란다. 이 기구는 21세기 한미관계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양국관계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잘못된 조약과 법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잘못된 제도의 정비, 나아가 바람직한 한미관계 설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능을 지녀야 할 것이다.

넷째, 광화문 촛불 시위는 이념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국익 보호 차원의, 평화로운 자연스러운 모임이다.

정부는 평화로운 순수한 집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충정어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민주주의 발전과 한미관계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렴해주길 바란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적 여론지도층이 평화적 시위를 음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2. 정치권

그 동안 일부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해왔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권은 한건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미군 문제에 대한 비판조차도 거리는 일부 정치권이 SOFA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성을 띤 것은 우선 환영하나, 국민들은 냉정하게 그 정치권의 진실성을 역사의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진정으로 정치권은 그 동안 민족문제와 민생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실책을 자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① 우선 여야가 당파를 초월하여 국회 차원의 [국회 SOFA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② 다음으로 여중생 사건에 대한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행해주기 바란다.

③ 셋째로 국회는 [국회 SOFA 개정 특별위원회] 의원을 미국 대표단으로 파견, 미국의 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한미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1995년 일본 오끼나와 초등학생 미군 병사 성윤간 사건시에 오끼나와 현 의회와 현 지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편 덕분으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냈고, 나아가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기소 이전 신병인도를 약속받았다. 지난 12월 10일 오끼나와 현 의회는 다시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오끼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 소령의 조기 신병인도 및 미일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sup>11)</sup>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V.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이번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미군 당국은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SOFA 개정보다는 “미군 범죄 발생 시 통보 의무 조항”과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 참여” 및 ‘훈련 규정 개선’을 한미합동위에서 합의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 SOFA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한미 양국은 개정 아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따가운 여론회피용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래서 2001년 한미 SOFA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팔목할 만큼 변화된 정세와 평등한 양국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떤 부분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된 부분도 있다. 우리 정부는 시민단체의 재협상요구를 겸허하게 수렴해, 미국 측에 SOFA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은 한미간에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재개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5)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

11) 연합뉴스, 2002. 12. 10일자.

고, 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특혜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SOFA의 불평등의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부문별 개정협상 의제는 크게 7가지로서 형사, 민사, 노무, 시설과 구역, 환경, 통관·관세·조세 등, 영어본 우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SOFA의 개정협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개정 정책제언을 살펴본다.

## [형 사]

### ① 형사관할권 적용 인적대상 범위의 축소(제22조 제1항 (가), 제22조 제3항 (가))

- 가족 개념에 일본처럼 ‘기타 친척’을 삭제할 것.
- 현행 협정에서 적용 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 형사관할권 인적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포함은 부당하며 배제할 것(제15조 제8항) : 타국 사례 없음.

### ② 형사관할권 제약 요소 전면 삭제(제22조 제3항 (다))

- 합의의사록에서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일본 SOFA는 없음)

③ 공무중이라도 대한민국(접수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와 공무 목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 ④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이후로 하되, 4가지 전제조건 삭제(제22조)

(4가지 조건 :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기소 시 구금 인도를 요청한 범죄 일 것, 12개 범죄,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

- 한국에서 체포해 구속 수사중인 미군범죄 중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은 계속 구금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4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음. 이것을 삭제 할 것.

### ⑤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 미국 대표의 입회 없이 미군 피의자의 예비 수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불가능 조항 삭제.
-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 증거 채택 불가능 조항 삭제.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기소 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조항 삭제
- 무죄 판결시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

### ⑥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포괄적 주체를 특정 미군 장성으로 한정할 것
- 공무의 최종 판단을 한국 법원도 관여할 수 있게 할 것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 [민 사]

- 비공무중 피해자 치료비 부담문제 조항 신설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 [시설과 구역]

###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임대계약은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10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10년 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일본 국내법 참조).

- 시설 구역 내 위험한 무기반입 및 주요 군사작전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일본 SOFA, 독일 SOFA, 필리핀 SOFA)

## [환경]

- 선언적 규정이 절은 환경 관련 규정의 법규범성 제고(존중이 아닌 이행 규정으로 전환 할 것)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① 협의 및 사전통보 의무 ②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 의무 ③ 환경오염 피해 조사 요청 허가 의무 ④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⑤ 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 의무 ⑥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보장 ⑦ 손해배상 청구에의 협조 의무 등과 같은 미군 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한국환경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 : 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환경법규가 적용되도록 함.

- 환경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 : 환경 관련 소송과 판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

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불법처분'의 통제를 강화하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비자격자'의 이용을 제한함.
- 특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함.
- 비세출자금기관의 과세 특혜를 남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슬롯머신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⑥ [미군 주둔 지역 여성 인권 보호 규정 신설]

-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기지주변 여성들의 인권보호가 방치되어 있음. 특히 현재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이자 매춘여성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혀 없음.

-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케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 독일 보충협정의 교환각서에는 부양 요구 조항이 있음.(Exchanges of Notes, maintenance claaim, August 3, 1959, vebalnote No.45: Annex 1)

## [영어본 우선]

본 협정 제31조는 한국어와 영어로 두개의 정본을 작성하는데,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 정본을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개정할 것. 이것은 어느 나라 협정에도 유례가 없음.

## [노무]

- 간접고용제로 전환 (제17조 제1항, 제2항) :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 •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 [통관, 관세, 과세 등]

- 관세 특권의 제한 및 세관 검사 강화

- 보건 및 위생 검역의 강화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 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 내 미군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한국 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

## ◆로드요지 2

#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이정희(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1. 서론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에 관해 미 군사법정이 미군 피고인들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후, 온 국민이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우리 정부는 미군의 재판을 존중하면서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 무죄평결은 공정한 재판의 결과라는 미군 측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현재 협정 개정이 아닌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 군사법원의 재판은 해당초 공정한 것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군 재판은 믿을 수 없다거나 미군 재판의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재판의 구조와 이 사건의 특징적 경과로부터 나오는 문제이다. 정부의 미군 재판 존중 입장은 이와 같은 경과를 무시한 일관론일 뿐이다.

협정 운영 개선만으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가 불평등한 협정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운영 개선만으로 이 사태가 잠재워질 수 없는 이유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고, 신병인도 시점의 부분적 개정에 지나지 않았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에 대하여 이제야 말로 본격적으로 개정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 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훈련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재판에 대한 평가 → 개선이나 개정이나 충돌길. 균형적 소화 문제다.

### 2. 신효순, 심미선 사망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미 군사재판에 대하여

#### 가. 배심원 문제

피해자와 배심원제도 긍정적으로 판단. 평생 없이 판단할수 있어야.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있어선 안된다.

순회심판으로 열리는 해외주둔 미군사재판 1심의 구조로는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원할 경우 주한미군으로 배심원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데, 사건에 대해 사전 지식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형사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보아넘기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피고인의 죄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미국 형사절차상 배심원 제도의 장점을 이 사건에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미군의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미군 당국이 초기부터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민과 미군 사이에 상당한 정치적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던 사건이었다. 더구나 미군 당국이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도, 자신들의 발표 결과를 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측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런 경과로 볼 때 피고인들의 동료인 주한미군들로서는 이 사건 기소가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치적인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미국 형사절차에서는 공정한 배심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므로, 검찰과 변호인으로서는 공판절차의 서두에 배심원에 대한 심문과 제척(除斥)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배심원을 배제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 남은 배심원이 일정수 이상(통상 6명 가량) 되지 않으면 배심원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게 된다.

관제병 니노 병장 재판에서 선정된 10명의 배심원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측의 요구로 13~14세 자녀를 둔 사람과 미국에서 1년 6개월 가량 로스쿨에 다닌 사람이 배심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법률전문가는 다른 배심원들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통상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7명의 배심원만 남게 되었다. 검찰로서는 피고인과 친인척이거나 동료로써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당해 사건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자세히 보는 등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소 내용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것이라면 유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 등을 배심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배심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과연 배심 의무가 있는 주한미군 중에 누가 배심원으로서 자격을 충족하였을 것인가? 주한미군이라면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한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일정한 생각과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은 증명할 수 없었다.

결국 배심원의 선정 자체만을 위해 재판 자체가 수없이 공전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형사적 처리에 있어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미군사재판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 나. 미군 검찰의 입증 문제

그러나 미군 검찰은 배심원의 위와 같은 기본적 편향을 인정하고 재판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미군 검찰로서는 배심원이 그 편향에 따라 재판하지 않도록, 사건의 전말에 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유죄입증의 증거를 제출했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미군 검찰로서는 단 한 번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므로, 검찰이 과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 입증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군 당국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평결이 나온 것이 미국 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입증을 요구하고, 통상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으며, 형사상 과실 책임은 민사상 책임과 구별되는 중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죄평결은 한국과 미국의 법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무죄평결은 법문화의 차이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입증을 요구하고,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 한국 형사법상으로도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이다. 한국 형사법상 과실책임 역시 민사상 과실책임과 구별되며, 형사법상 과실범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 사실, 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에 더하여 객관적 귀속, 곧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보호목적 관련성(주의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규범이 이러한 결과 방지를 위한 규범이었는가)을 요구한다. 더구나 미군형법상으로 업무상 중과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처벌되어, 그 과실이 특별히 중한 정도에 이르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무죄평결의 이유로 법문화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군 당국 스스로가 미군법정에서 한국 법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서 한국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였던 것을 떠올리면, 미군 당국이 뒤늦게 법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① 배심재판 불공정성 ② 검찰 명문석기식 유리입증 성질하지 않았다.

실제적인 문제는, 미군 당국이 애초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밝혀내지 않은 채 과실이 있다고 판단만 바꾸어 기소함으로써 유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관계인 통신장비의 이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조차 재판을 통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두 피고인들이 통신 장비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는지, 이상이 없었다면 운전병이 정지 지시를 듣지 못한 것이 운행 규정에 위반하여 외부와 통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운전병이 장갑차를 제동시킨 시점이 언제이기에 최소 3m 이상 되는 거리만큼 두 피해자를 모두 밟고 지나가 정확히 앞에 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야 정지한 것인지, 대열 인솔 중대장은 왜 주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여부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 검찰로서는 마땅히 배심원들의 편향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입증했어야 하는데, 통신장비 이상에 대해 엇갈리는 증인의 주장을 그대로 시인하고, 지휘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등, 입증에 문제를 드러냈고, 사건의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은 결과는 무죄평결로 이어졌다.

이후 더욱 계속 수사 추진하여 한 명여한 절라

#### 다. 재판권 포기와 한국측 수사의 필요성

이때문에 재판권 포기 했던 것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바로 이것이다. 미군법정의 배심원들이 피고인들의 동료인 주한미군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들이 기본적 편향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건의 실체를 진지하게 숙고하게 할 정도로 미군 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거부한 결과로 이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절이다.

당초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미군이 한국인 소녀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만 출발한 것이 아니다. 미군 당국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도저히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을 것임이 이 사건에 관한 미군 당국의 태도 자체에서 드러났고, 이미 미군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수많은 사건에서 반복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의사록 규정에 따라 절대 다수 비공무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하는 한국의 관례와는 달리, 이 사건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전혀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 협정은 미군이 한국 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어떤 기준으로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권 포기 규정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은 그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종적으로 남는 문제는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의 수사기관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데 힘을 모으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던지 간에 유죄 입증은 가능하였을 것이다. 한국 검찰의 수사에만 따르더라도 운전병이 통신 장비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운전병의 미군범죄수사대 진술에도 충돌 직전에 빨간 옷을 입은 피해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추가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사건의 전체적 윤곽을 제대로 그려냈다면,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평결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30분에서 1시간 가량 미군은 한국 경찰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미군 의무대와 현병만을 불렀다. 한국 경찰은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 사건 발생을 알았고, 신고 즉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이미 구급차가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던 때였다. 경찰은 사고 운전병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목격자로서 그 전후 정황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이모부는 한국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사건 발생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의정부지청에 미군 피의자들을 고소하기 전까지, 한국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의 기초로 여겨지는 초동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사건 발생 1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필수불가결한 수사방법인 현장검증 한 번 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미군 부대 안에 가서 서있는 장갑차를 보았을 뿐이다. 이처럼 한국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방기한 이유는 단순하다. 미군의 공무중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검찰 스스로 말하는 대로, 미군의 공무중 사건에 대해 최초로 수사한 사건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재판권의 귀속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수사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1차적 재판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협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뿐이다.

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무중 사건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합의의사록이 규정한 대로,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모두 미군이 행사하여왔고, 협정의 재판권 포기 조항은 대한민국의 포기기에만 적용되었을 뿐 미군 당국의 포기에는 적용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협정에는 공무중 사건 이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판권 포기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불평등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 보존, 피의자의 최초 진술 청취, 이를 위한 최소한의 유치기간 확보, 공동 현장검증, 수사결과의 수시교환 등의 구체적 조치가 협정에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협정 자체가 바위

결국 이 사건 무죄평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호혜적이고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내용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 정부의 개정 불가 입장은 이 사건 무죄평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나온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139쪽 ③

### 3.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인가, 운영 개선인가

#### 가. 2000년에 이미 개정된 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미 2000년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 개선은 가능하지만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형사재판권 분야에 대하여는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을 도입한 것 외에는 개정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에서는 12개 중대범죄에만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결국 본협정의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을 다시 예외로 만들었다.

또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하고, 피고인에게 미군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독소조항마저도 그대로 존속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 결과 협정 개정 이후에도 한국 수사기관은 공무중 사건이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비공무 사건이더라도 신원확인 후 곧바로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할 뿐,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진술마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전부터 불평등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협정의 틀이 유지된 결과, 비공무중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역시 별달리 변화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수사기관이 초동수사를 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도, 지난 번 개정이 실효성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정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2000년에 합의했으니 다시 또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내용상 문제를 시기 문제로 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침해 상황이 얼마나 더 이상 지속되어야 재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 나. 전부의 협정 운영 개선책에 관하여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 역시 구태의연하다. 미군을 신병인도 후에도 소환하겠다는 것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무중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는 것 역시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하다. 오히려, 공무중 범죄인지 여부의 최종적 결정권을 미군 장성에 주는 협정을 그대로 두고 협의만 하겠다는 것은 협정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미군훈련에 대해서도 독일 보총협정에 정한 것처럼 주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훈련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정개정이 필요한데, 정부안대로 한국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도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미군 측이 부담할 것을 한국측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비공식적 거래에 많다.  
이처럼 미흡한 내용을 합의사항만으로 정하여 운용만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협정으로 침해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 또 미군의 위험한 훈련과 범죄로 위협받는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미군이 공무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평등한 주권국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주둔군지위협정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다. 본협정은 양국 사이에 재판권을 포기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한국 측으로부터 비공무 사건의 90% 이상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 받으면서, 자신들은 아무리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라도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4. 개정방향

대한민국과 미국 양 정부는 즉각 개정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차제에 형사재판권 관련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이 의심되어오던 환경 관련 부분등이 개정에 포함되어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훈련에 관한 통제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 가.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의 핵심적 개정 사항

- ①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도록 하여 미일 소파 및 나토 소파보다 넓은 인적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 ②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여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고, 미일 소파와 같이 법관이 최종적으로 공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전속적 재판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간의 재판권 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사건 발생 즉시 통보·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공유에 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⑤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12개 중대 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폐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⑥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 능력 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으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 ⑦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한 훈련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2000년 개정시 개악된 영어본 우선조항을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동등하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재개정하여야 한다.

#### 나. 훈련 관련 규정 신설의 핵심적 내용

① 미군 당국이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 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등이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합중국 군 당국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미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 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토론판지 3

## SOFA 개정 검토 의견

원희룡(국회의원, 한나라당)

### □ SOFA 개정의 필요성

- 국민의 인권, 재산권, 환경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적 자존심 회복.
- 주한미군 관련 사고에 따른 감정적 대립 악화와 반미 감정 확산 방지.
-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변화와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한미관계의 변화를 조약에 적극 수용.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성과 평등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평화통일 논의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기여.

### □ 한·미 SOFA 개정의 기본 방향

- 전면개정
- 호혜평등의 원칙
- 방위비 분담의 공정성 확보
- 영역주권과 민족적 자존심 회복
- 미군의 주둔 목적과 군사적 필요성의 엄격한 적용
- 구조적·제도적 개정

호혜적이고 평등한 협정으로 가지 못했다.  
이 사건 계기로 협정 바꿔야.  
초월적으로 의미 모아  
이장학 교수 의견 블로그에 ◉ 개정 위해 노력하겠다.  
미국을 상대로 협정 개정 결실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 SOFA 체결(1967)전까지 주한 미군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옴.
- \* 1991년 1차 개정-한국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
- \* 2000년 12월 2차 협상
  - 환경조항 신설, 살인과 강간 등 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 신병은 우리

사법당국이 확보하는 조항이 타결. 2001년부터 발효되었으나 주요 범죄를 12개로 제한한 점, 미군의 한국 환경법에 대한 '준수'가 아닌 '존중'으로 규정한 점 등은 실효성 차원에서 큰 진전을 보기 힘들다는 평.

#### \* SOFA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은 재판권 관할 문제

특히, 형사청구권은 재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대한민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 경우라도 합의의사록을 통해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미군범죄건 수 對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

2000년 311건 - 23건(7.3%)

2001년 376건 - 26건(6.9%)

### 현행 SOFA의 문제점(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 □ 주요 문제조항

##### ① 적용범위의 문제

-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고 있음.

##### ② 공무중이라는 판단

-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

##### ③ 재판권 이양

-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하고 있음.

##### ④ 수사협조, 예비수사권 및 구금인도

- 원칙적인 수사협조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 당국이 협

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미 양국간 수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군피의자를 미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피의자 심문 절차, 예부수사 시기 및 인도시기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 확인 이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12개 중대 범죄시에만 기소시 구금 인도하도록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시에는 구금인도가 오히려 예외로 적용되고 있음.

### SOFA 개정 검토 의견

#### □ 문제조항별 개정의견

##### 1. 적용범위

-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 제외(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 2. 공무중이라는 판단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개정(합의의사록 중 제3항 (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 3. 재판권의 이양

-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합의의사록 중 제3항(나)에 관하여 1)
-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4. 수사협조, 예비수사, 구금인도

-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함(양해사항 중 제5항(다) 1)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 인도할 수 있도록 함(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5항(다) 2)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하면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함.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2.)
-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함.

#### □ 신구 대비표

- 적용범위 (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 (다)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또는 기타 친척" 삭제)	나토, 미일협정은 기타 친척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5조 제8항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b>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b>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후략)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삭제).	초청 계약자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 보호 조항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없는 특례로, 나토, 미일 협정에는 유사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 공무중이라는 판단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가)에 관하여 1.)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 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공무증명서에 따라 재판권 귀속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미일협정과 같이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제한하여야 함.

#### ○ 재판권의 이양 (합의의사록 제 22조 제3항(나)에 관하여 1)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항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가 포기한다.	삭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제3항 (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에 정한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이 제1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합동위원회에서 합당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만 호의적 고려를 하여 미군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왔던 점에 비추어,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예정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도모하여야 함.	

○ 수사협조, 예비수사, 구금인도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 (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당국의 수사·재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 (다)에 관하여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중상해,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후략)	미군피의자가 일단 합중국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체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폭행 또는 상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상해의 경우도 범죄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나쁜 강간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 (다)에 관하여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후략)	삭제	본 협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구금인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른바 12개 중대범죄에 한하여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제6항에 관하여 1.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어느 일방 국가 당국은 타방 국가 당국에 유선으로 그 발생일시와 장소를 즉시 통보하고, 타방 국가 당국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서면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 보존, 공동 현장 조사, 임의동행 협조, 즉각적인 수사기록 송부 등의 구체적인 수사협조사 항이 신설되어야 함.

<한미 SOFA/미일 SOFA/미독 SOFA 비교>

조항	한미 SOFA	미독 SOFA	미일 SOFA
구속수사	불가능	가능	가능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공무판단	미군장교 고급지휘관	일본 법원	
전속재판권 포기	중요 경우 아닌 한 포기 원칙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형사재판 협정 적용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친척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기타 친척 제외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인정	인정
경찰권 행사	미군시설 내에선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권 행사 불가능	현행범일 경우 영장없이 체포, 구금 가능 범죄 예방 위해 미군 동의없이 무기 압수 가능	군속 미군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이 체포했거나 미군시설 내에 있더라도 일본 당국에 인도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 관하여

송명길(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 노동위원)

### 1.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가해 미군 병사 위커, 니노 등에 대한 무죄평결을 계기로 제기한 국민적 항미운동

2002. 6. 13 비극적인 두 여중생의 사망은 그간의 미군의 군사훈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고된 사고였다. 훈련 지역 근방 주민들에게 사전통보, 진행도로 점검, 경고방송, 통신시설정비 등 제반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폭 보다 넓은 궤도차량을 동원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고가 나도 좋다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살인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어린 양들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을 하여 왔다. 월드컵 열기에 몰리기도 하였지만 행정부, 정치권, 언론 학계 등 사회지도층 그룹은 불행한 교통사고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막연히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 거부와 미군 당국의 조사발표, 무성의한 재판과정, 그리고 무죄평결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이번 우리 국민들의 대대적인 항미운동은 지난 올림픽 때 오노의 금메달 탈취 사건을 비롯,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무례함,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발언 이후 F-15K 강매 등에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부나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 소파개정안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김원웅 의원과 본 의원이 주도하여 몇몇 뜻있는 의원들만 개정안의 미비점을 제기하고 반대 표결을 하였을 뿐 여야 지도부 및 대다수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준안에 동의하였다. 이회창 후보도 물론 포함해서. 그런데 뒤늦게 대선 국면에서 이에

영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빙축을 사고 있다.

뒤늦게나마 한미 당국이 국민 정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파운영개선 방안과 개정여부 등의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제반영역에 있어서 한미당국간에 보다 자주적이고 상호평등한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19 선택에서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주적인 정권수립이 필요하다.

이번에 긴급히 마련된 소파개정안 토론회에서 본 의원의 발제 초점은 소파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형사문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 2.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 7. 17.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3. 10. 1.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이에 근거하여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상주병권을 인정한 점, 미군주둔의 목적규정이 결여된 점, 철수에 관한 협의규정이 결여된 점, 주한미군의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점,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이에 기초하여 소파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이 되어있다. 미일 소파는 10년,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은 25년)으로 규정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66년 협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법, 시행령, 명령규칙과 같은 상태로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명령, 규칙이 상세화 되어 있지 않다. 체계상의 혼란이 있다. 즉 본 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에 있기도 하고 오히려 하위규정이 상위규정과 상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하위규정이 오히려 상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주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본 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제28조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제30조 협정의 개정(revision of agreement),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duration of agreement) 등이다.

한미합동위원회는 우리 측 외교통상부 북미과장과 주한미군 측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가 되고 그 산하에 14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우리측 부서 과장급 이상 직원과 미군측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나와 사안별로 운영하고 있다.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본 협정 28조에 의해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다.

#### 4. 형사재판권 행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정부당국의 입장 그리고 일본소파, 독일소파와 비교

##### 가. 재판권 행사

미군범죄행위에 대하여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갖고 속인주의에 의거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중첩적으로 가질 수 있다. 재판권이 중첩될 때 누가 우선적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협정 제22조에 의하면 공무집행중의 범죄와 오로지 미국 또는 미군인 군속, 가족의 재산과 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해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제3항에는 1차적 재판권을 보유하는 국가는 타방 당사국의 포기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은 일본, 독일소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적으로 본 협정 제22조 제3항(나)와 관련된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particular importance)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본소파에는 없다. 독일소파에는 ‘미군당국의 포기요청이 있는 경우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 다만 사망사건, 강도, 강간 등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독일의 사법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포기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포기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요구는 (1) 사망사고 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달라. (2) 1차적 재판관할권의 포기조항을 삭제하자. (3) 공무중 범죄의 판단주체를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법원이 기록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미소파규정은 미국이 일본, 독일 등 세계 80여개 국가와 체결한 소파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공무수행중인 범죄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 파견국에서 재판권을 갖는 것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키르키즈스탄과 체결한 소파에서 우리군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한국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무중 범죄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 파견국이 우선적 재판권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재판권포기요청시 호의적 검토의 의미이다. 이번 두 여중생사건 문제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소파가 제정된 이래 최초로 재판권포기요청을 하였으나 호의적으로 검토(?)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거절되었다.

다음은 본 협정이외에 합의의사록에 미국당국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조항의 삭제문제이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무중이 아닌 범죄행위, 즉 대한민국이 우선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폭행, 교통사고, 도주차량 등 일반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미국의 요구로 재판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구속사유가 될만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법원에 의해서도 구약식이나 불구속기소가 될 일반 사안과 50%이상의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교통사고범죄행위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오히려 미국측에서는 특히 중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한국당국이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을 들어 한국당국에 개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통사고 등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미군 군용차량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무중인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미군의 재산도 파악할 수 없고 소장송달도 어렵고,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한 절차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공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미군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에 의해 기록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져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소파는 미군발행의 공무증명서가 충분한 증거는 되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 문구는 일본에 재판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원이 재판을 하는 중에 공무중이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면 이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지마사건의 경우처럼 미일간에 공무범죄여부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이 재판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공무중 여부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시간의 행위라고 하여 모두 공무중이 되지 않는다. 1957년 일본 지라드 사건이 발생을 하였다. 이때도 미군당국은 공무중 사건이라고 우겼다. 자신이 없어 나중에 재판권을 포기하기는 하였지만.

즉 공무시간 중에 공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안 등에 대해 공무여부 다툼이 생길 때 이에 대한 해결절차규정이 필요하다.

#### [참고 : wilson v. girad 1957. japan 사건]

1957. 1. 30 일본 군마현 소재 주일미군 사격연습장에서 william jirad 미 육군 3등 특기병이 사격장에서 기관총과 기타 장비의 감시경비 근무중 휴식시간에 사격장 내에서 탄피를 주우려는 일본 여인 사카이를 사살하였다. 이 사건의 범죄는 휴식시간 중에 행한 반복적인 행위로 판시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미국 없는 사적인 행위로 판시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여전히 공무집행중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1차적 재판권이 자신들에게 있지만 여론을 고려하여 포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 나. 소파의 적용대상

군인, 군속 및 그 가족, 기타 친척이 포함되어 있다. 초청계약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삭제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친척으로서 가족의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미국법원 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군인 또는 군속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후 이를 한국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단 한명의 친척도 통보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비록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 다. 신병인도시기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고 개선된 부분이기도 하다. 2001년 개정안에서 살인, 강간, 흉기강도, 폭행치사 등 12개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시 신병인도를 받고 그 외는 재판확정시 신병인도를 받기로 하였다. 모든 범죄의 신병인도요청시 미국은 기소 전후 제한없이 호의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다. 살인죄 및 죄질이 나쁜 강간죄의 경우 현행법으로 신병을 확보하였을 때 계속 구금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본소파처럼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신병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기소시 신병인도는 구속수사대상에 한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실제로 필요한 중대범죄를 망라하여 12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추가 가능하므로 조약개정없이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독일은 판결확정시 신병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불구속상태에서는 신병인도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12개 범죄 이외의 구속사안이 되는 것에 대해 합동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2개 범죄행위 중 11번째에 ‘교통사고 치사후 도주’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반대해석상 가장 일반적인 범죄행위인 교통사고 상해후 도주하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이 빠져 있다. 우리나라 특가법에 의하면 상해후 도주차량은 1년이상의 징역형이다. 합의가 되고 초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구속된다. 그런데 이 조항이 빠져 있다.

#### 라. 구금권 해석의 문제

개정 SOFA 제22조 제5항(다)에서는 범행 현장이나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heinous crime of murder)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한국측이 체포하였을 경우에, 미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첫째로 ‘살인’이 모든 살인을 포함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에는 1급, 2급 살인이 있고, voluntary manslaughter, involuntary manslaughter가 있다. voluntary manslaughter는 사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살인을 말하고 involuntary manslaughter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실치사에 해당한다.(우리나라 형법은 살인의 고의를 분류하여 처리하지 않고 모

두 살인죄로 치별한다. 단지 살인의 치밀한 계획, 모살이나 우발적인 것 등의 여부는 양형상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둘째로 죄질이 나쁜 강간(egregious rape)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강간을 폭행,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 한정하여 보는 반면 미국의 경우 부부간의 강간도 인정되고 합의에 반하는 성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rape를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따라 들어간 관형사이다. 이것이 논란이 된다. 죄질이 좋은 강간인지 나쁜 강간인지의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외교통상위 상임위에서 외무부는 살인과 강간의 범주에 대해 한미합동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합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과정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

#### 마. 기소 후 수사 제한 그리고 미 정부 대표 참관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배제, 검사의 상소 제한 등

미 정부대표 참관 없는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배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 진술거부권, 검찰조서의 경우 특신상황 등의 요건이 있고, 경찰조서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 미 정부대표 참관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배제 조항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불신에 기초한 것이다. 삭제되어야 한다.

검사의 항소제한은 우리나라 형사법 실태가 오히려 문제인 면이 있다. 미국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의거하여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가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의 착오가 있는 판결 및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기각되거나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감경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무죄평결이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재심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법리와 재심문제 등에 대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 바. 초동 수사 협력 문제와 형사 재판 서류의 송달 문제

본 협정 제22조 제6항 (가)에 의하면 주한미군당국이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에 상호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22조 제5항 (다)의 합의의사록에 관

한 양해사항은 한국당국이 주한미군을 체포한 후 신병을 주한미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초동단계 수사협조의 구체적 지침과 사례 등을 적립하여 관행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분노하는 것은 초동 단계의 수사와 현장확보, 현장검증등의 철저한 진상규명노력이 부족한 점이다. 그리고 미군당국의 통신장애문제와 피해자 발견거리 30미터 등이 의정부지청에서는 15미터로 바뀌는 등 일관성 부재가 불신을 자초하였다.

형사재판서류송달은 직접송달이 원칙이어서 피송달자 본인을 만나지 못할 경우 송달이 불가능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영안 실 부소장 맥팔랜드케이스가 이 경우이다. 맥팔랜드는 사체방부용처리액인 포름알데히드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였다. 이것이 공무중 행위인가는 논란이 된다. 문제는 그가 군인이 아니라 군속이기에 일차적으로 재판권이 대한민국에 있다. 왜냐하면 미군형법에 의해서도 민간인은 군사법정에 재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군은 관할권에는 재판권 뿐만 아니라 징계권도 포함되므로 관할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 구약식을 하였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를 하였지만 공소장부본 송달이 안되고, 구인장을 2회 발부하였으나 미군 당국이 거절하여 신병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 5. 워커, 니노 미군병사에 대한 재판과정의 문제점

시민단체가 미국 법무부에 보낸 항의편지에 대한 답신을 미국 법무부의 테러폭력범죄담당과장 레이놀드란 사람이 보내왔다. 법무부보다는 국무성과 협의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덧붙이기를 만약에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It will be fully investigated and that, i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ose responsible are deemed appropriate, they will be vigorously pursued)라고 되어있다.

본 의원의 편지에 대한 켈리 특사의 답장에는 미군 법무부는 최근에 두 명의 미군을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으며 미군은 이러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US military justice authorities recently decided to try two USFK personnel on charge of negligent homicide and USFK is taking steps to prevent a recurrence of any such accident)라고 되어있다.

과연 완전한 조사가 시행되었는가? 그리고 강력하게 재판절차가 시행되었는가?

## 가. 적용법조

일단 적용 법조를 살펴보자. 미국은 살인에는 1급, 2급 살인, murder가 있다. 그 하위개념의 살인으로 manslaughter가 있다. 즉 살의없는 살인, 일시적 격정에 의한 살인의 개념이다. manslaughter에는 voluntary and involuntary manslaughter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과실치사는 involuntary manslaughter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미군당국은 involuntary manslaughter를 적용하지 않고 negligent homicide를 적용시켰다. 이는 UCMJ(Uniform Code Military Justice) article 134를 적용한 것이다.

본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나 법무부 당국을 통해 워커, 니노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하려고 하였다. 지난번 본인의 항의서한에 대한 Hubbard대사의 답변서를 전달한 미국대사관의 Phillip A. Min(미대사관 Chief of political internal affairs)을 통하여 미 검찰의 공소장을 얻게 되었으나 법무부로부터는 미군과의 협약으로 자료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두 여중생 사건의 공소장을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인 법무부를 통해 받지 못하고 미 대사관의 비서관을 통하여 받는다는 사실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다음은 미군측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다.

## THE CHARGE: VIOLATION OF THE UCMJ, ARTICLE 134

SPECIFICATION 1: In that SGT Mark K. Walker, U.S. Army, did, at or near Yangju, Republic of Korea, on or about 13 June 2002, unlawfully kill Ms. Hyo-Sun Shin, by driving a vehicle, Armored Vehicle Launched MICLIC(AVLM), against the said Ms. Hyo-Sun Shin in a negligent manner.

SPECIFICATION 2: In that SGT Mark K. Walker, U.S. Army, did, at or near Yangju, Republic of Korea, on or about 13 June 2002, unlawfully kill Ms. Mi-Son Sim, by driving a vehicle, Armored Vehicle Launched MICLIC(AVLM), against the said Ms. Mi-Son Sim in a negligent manner.

## THE CHARGE: VIOLATION OF THE UCMJ, ARTICLE 134

SPECIFICATION 1: In that SGT Fernando Nino, U.S. Army, did, at or near Yangju, Republic of Korea, on or about 13 June 2002, unlawfully kill Ms. Hyo-Sun Shin, by driving a vehicle, Armored Vehicle Launched MICLIC(AVLM), against the said Ms. Hyo-Sun Shin in a negligent manner.

SPECIFICATION 2: In that SGT Fernando Nino, U.S. Army, did, at or near Yangju, Republic of Korea, on or about 13 June 2002, unlawfully kill Ms. Mi-Son Sim, by driving a vehicle, Armored Vehicle Launched MICLIC(AVLM), against the said Ms. Mi-Son Sim in a negligent manner.

## 나. 구성요건의 해당성 검토

일단 위 적용법조상의 과실치사의 구성요건의 행위를 분석하면

(1) 어떤 사람이 죽었고, (2) 그 사망이 피고인의 작위나 부작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3) 피고인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위법하며, (4) 그 사망을 야기한 피고인의 작위나 부작위가 단순 과실(simple negligence)에 기인한 것이고, (5) 그 행위가 직무상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일 때(under the circumstances, the conduct of the accused was to the prejudice of good order and discipline in the armed forces or was of a nature to bring discredit upon the armed forces.), 당해 피고인에 대해 불명예 제대, 봉급·수당의 몰수,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윤남근 판사가 2002. 11. 27. 대한매일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미국법상 유죄의 요건(criminal negligence)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과실의 정도보다 월등히 높다. 즉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할 정도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형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법정에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고 쓰고 있다.

법무부 당국도 같은 논리로 미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법문화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1988년 이태리 주둔 미군 군용기가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케이블을 충격하여 20명을 사망케 한 사고에 있어서도 소파규정에 따라 미 군사법원이 재판권 행사를 하여 무죄평결이 나왔고, 2001년 하와이 오하우섬 부근에서 미군 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본어선을 충격, 9명의 일본선원을 사망케 한 사고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을 해주는 외에 잠수함 선장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도 비록 그 결과는 참담하지만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고 미군 훈련중에 발생한 불행한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미 군사법원이 형사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죄로 평결한 것은 과실범에 대한 미국식 법 적용을 한 것이지 우리 국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일단 위 두 사건 사례는 이번 두 여중생 사례와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내용을 살펴서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설령 두 판례가 있다하더라도 시대가 변했다. 꼭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와 법적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봐도 의문점이 남는다. 훈련 계획의 무리한 설정, 교차 장갑차량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발견거리 시점, 통신시설의 상태, 과속 여부, 음주 여부, 미필적 고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만 보더라도 충분히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윤남근 판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할 정도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 형사법원 체제가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유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심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다. 부대 지휘관(conviening authority)이 배심원단에서 지명한 동료군인들로 배심원이 구성된다. 같은 동료군인 군 검찰관과 군 판사에 의해 군사법정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형사소송법절차상 비법률가인 일반배심원을 상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공소 유지 활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죄평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juror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얼마나 배심원 구조가 변론 활동과 법정외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미군 검찰관의 공소유지의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측 증인이 대부분 공소유지에 뒷받침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변호하는 증언을 하여서 변호인 측 증인 신문도 필요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도 확보되지 못하고, 의정부지청의 수사자료가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혼출되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이에 재판참관자들의 정확한 보고정리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1. 군사법원의 종류

미국 군사법원(Courts-martial, military criminal trial courts)은 상설법원이라기

보다 부대지휘관(Convening Authority)이 현안이 있어 필요할 때 임시로(as needed) 개설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음.

군사법원은 군형법(UCMJ) 위반 범죄를 저지른 군인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데, 관할 사건의 경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음.

(1) 약식 군사법원(summary court-martial) : 1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30일 이하의 구류형, 1달치 봉급의 2/3 감액, 최하위 호봉까지의 호봉감경 조치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

(2) 특별 군사법원(special court-martial) : 3인 이상의 배심원(장교 및 사병으로 구성됨. 사병을 배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어야 함)으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할 수 있음.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최하위 호봉까지의 호봉감경, 비행을 이유로 한 제대조치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

(3) 일반 군사법원(general court-martial) : 정식의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법률전문가인 군판사와 5명 이상의 배심원(장교 및 사병으로 구성됨. 사병을 배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어야 함)으로 구성되는 공판 절차를 거침. 군 법무관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고(military attorney), 검찰관도 됨(judge advocate). 군 형법이나 군사법원편람(Manual for Courts-Martial)에 규정된 모든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 과실치사 사건도 그 형량에 비추어 일반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2. 미국 일반 군사법원의 공판절차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판함. 민간법원에서 하는 형사재판절차와 유사함.

(1) 공판준비 회의(Pretrial Conference) : 법률 전문가인 군 판사의 주재하에 절차적, 법률적 쟁점을 정리함.

(2) 공판전 변론절차(Pretrial Hearings) : 군 판사의 주재하에 절차적, 법률적 쟁점을 해결을 위해 구두변론 청취, 증인신문이나 기타 증거조사 등을 실시함.

(3) Arraignment 절차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guilty or not guilty plea)을 듣게 됨. 이때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not-guilty) 다음 (4) 이하의 유무죄 인정 절차를 밟게 되고, 유죄를 인정하면 곧바로 양형 절차에 들어가게 됨.

다만,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배심재판을 받지 않고 군 판사만에 의한 재판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할 수도 있음. 원칙적으로 미연방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인정되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미국 군인에게 인정되지 않음("a military accused has no Sixth Amendment right to a trial by jury." United States v. Lambert, No. 00-0319)

(4) 배심원후보군 구성(The Court Member Panel) : 지휘관이 장교나 사병 중 배심원이 될 자를 정함. 사병을 배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어야 함. 지휘관으로부터 배심원이 될 것을 명령받은 장교나 사병은, 군사법원의 배심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 최우선적인 군복무 의무 사항이 됨.

(5) 배심원후보군(court-martial members)에 대한 심문 및 기피(Voir Dire/vwahr deer/ and Challenges) : 피고인이나 군 검찰관(trial counsel)은 배심원후보군에 포함된 개별 배심원후보자가 당해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그들을 심문하여 배심원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군 판사로 하여금 배심원에서 제외하게 (dismiss) 함. 검사나 피고인은 각 1명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할 수 있음(이른바 peremptory challenge).

민간 연방법원의 경우 형사배심은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의해 유죄나 무죄를 평결하고, 유죄인 무죄인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여 결론에 이를 수 없으면 산회하나, 군사법원의 경우 5명 이상의 배심원이 2/3이상 유죄평결에 찬성하면 유죄평결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죄평결을 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음.

(6) 증거조사(Trial on the Merits) : 배심원(court-martial members)이 구성되면, 군 검찰관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인 등 증거를 제출하여 조사하고, 피고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등 증거를 조사함.

(7) 증거규칙(Rules of Evidence) : 군사법원에서 사용하는 증거법원칙은 민간법원의 연방 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과 유사한 Military Rules of Evidence(MRE)를 사용함.

(8) 변호인(Defense Counsel) : 특별군사법원과 일반군사법원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됨. 군법무관(judge advocates)이 변론활동을 하는 경우는 무료로 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민간인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음.

(9) 최종변론(Closing Arguments) : 증거조사 후 군검찰관과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게 되고, 이어 군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주의할 점을 지시함. 무죄추정의 원칙상 입증책임은 군검찰관(미국 연방정부)에게 있고, 입증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에 이르는 고도의 증명을 요함.

(10) 평의와 투표 : 민간법원의 형사배심재판의 경우와 현격하게 다른 점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해 유무죄평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전체의 2/3 이상의 인원이 유죄에 찬성하면 유죄평결이 내려지고, 2/3 이하의 인원이 유죄에 찬성하면 무죄평결이 내려진다는 점임. 예컨대 배심원이 7명이면 7명 전원이 아니라도 5명만 유죄에 찬성하면 유죄평결이 내려짐. 달리 말하자면 4명만 유죄에 찬성했다면 피고인은 무죄평결을 받게 됨. 그러므로 군사법원의 공판에서 민간법원에서와 같이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무죄평결이나 유죄평결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이른바 hung jury에 의한 mistrial) 생기지 않음. 다만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만장일치의 결론에 이르러야 함.

배심원들의 평결은 기명·비밀투표에 의해 함. 배심원들의 군계급이 서로 다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평의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음.

(11) 양형절차 :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즉시 양형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점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유죄인정절차 후 양형자료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제출하기 위해 양형절차 진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점과 크게 다름. 군사법원에서는 민간법원에서와 같이 보호관찰관이 하는 양형자료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가 없음. 대신 변호인이나 검찰관이 양형자료(전과, 범행수법, 범행결과, 기타 정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함.

유무죄 인정여부에 관해 배심재판이 열린 경우 양형도 배심원(court-member)이 하게 되므로 피고인, 변호인 검찰관은 양형자료에 관해 배심원들 앞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적절한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양형에 대한 지시사항을 고지하게 됨. 이어 배심원들은 형량에 관한 평의에 들어가 형량을 정함.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각자 적절하다고 여기는 형량을 제안하여 그 제안에 대해 투표를 하여 형량을 정함.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에 의해야 하고, 무기징역형이나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전체의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이점이 판사만에 의해 양형절차를 진행하여 형을 선고하는 민간의 연방법원 형사절차와 크게 다른 점임.

유무죄 인정여부에 관해 피고인의 선택에 의해 배심재판 아닌 군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았으면, 양형절차도 군판사가 진행하여 형을 선고함.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만이 관여함.

민간법원에서 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불명예 제대(dishonorable discharge)를 시키거나, 감봉 조치를 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이 군사법원 형선고의 특징임. 양형절차가 끝나면 배심은 해산된다.

(12) 상소절차 : 다음의 3단계의 상소절차가 있으므로, 결국 군사법원 사건은 4심제인 셈임.

①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 : 1심인 군사법원에서 사형, 징벌적 제대조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해 피고인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이 자동적으로 당해 사건을 재심의함. 피고인은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형사항소법원은 3명 이상의 군판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나 민간인으로 구성됨)로 구성되며, 1심 군사법원의 유죄판결에 한해 재심의함. 즉,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며, 형사항소법원에서 변경되지 않음.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도 없음.

② 軍을 관할하는 미연방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 형사항소법원에서 인정된 형량(사형 포함)에 대한 사건, 형사항소법원에서 심의된 사건으로서 군검찰총장(Judge Advocate General)이 이송한 사건, 형사항소법원이 심리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 미연방 항소법원이 항소를 승인한 사건 등을 심리함.

③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아주 드물게(항소법원 사건의 10% 정도), 군을 관할하는 미연방 항소법원 사건이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 상고되어 심리되기도 함.

## 6. 소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급히 정리하여 글을 쓰다보니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다. 이번 기회로 우리 국회차원에서 소파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형법체계나 형사소송절차 체계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를 보다 발전시켜야 될 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소파규정 하에서도 이를 어떻게 자주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합동위원회를 내실화시켜 각 협상주체들의 논리와 협상능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인 관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고싶은 사실만 보게된다. 관심사항만 보이는 것이다.

이번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은 삭발단식농성장의 신부님 강론말씀처럼 우리들의 무관심과 외면의 죄악을 일깨우기 위한 속죄양이었다. 우리들은 미군범죄 행위와 처리과정에 대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여왔다.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진정한 한미간의 평등한 우호관계가 증진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 ◆토론토론요지 5

###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12)

**최규엽(민주노동당, 미군기지 없는 나라 운동본부장)**

#### 1. 소파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3일 미군 페도차량에 의해 저질러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암살사건은 언론과 보수 정치권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에 포함된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제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군범죄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권을 미군에 요청했으나 미군에 의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한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하룻만에 경질되어야 했다. 결국 의정부 제2사단 미군 법정에서 강행된 두 여중생 살인미군 재판은 살인미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선고 다음날 즉시 이들은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다.

설마 하던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주대로에 사람을 두 명이 암살시켰는데 어찌 무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살인 미군을 한국법정으로! 부시대통령 사과! 소파개정!을 외치면서 수 만명이 추운 겨울에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주한 미 대사를 시켜 기만적인 사과를 했으나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반미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12월 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단호히 거부했고, 미국 여론은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방미 대표단 활동을 철저히 무시해 버렸다.

12) 이 토론토론요지는 지난 9월 5일,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느티나무 까페에서 한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소파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때 발표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안의 취지」와 「8월 5일 자 법무부 보도 자료 반박 및 우리의 요구」를 참고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소파개정이 아니라 소파협정 운영 부분의 개선을 미국에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투쟁이 반미투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고 신효순 심미선 양 투쟁에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한나라, 민주 양당은 대선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나마 뒤늦게 이 투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나라당 양당이 진심으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미행정협정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전주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등에서 소파개정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모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어야 소파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군사정보 즉 군사적 주권을 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는 미군이 반대하면 그만이다. 미군을 강제할 어떤 법적, 제도적 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소파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미군이 이 땅에서 영구히 주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단계적 철수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와 소파개정국민행동에 가입한 단체로서 위 단체에서 기존에 제출한 소파개정안 중 형사재판권 부분은 여기에 따르기로 한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란 자국 내에서 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군 작전지휘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완전한 영토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에게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있고,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그리고 형사재판권의 제한이나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반환 관리면에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미일 협정과 독일보충협정을 이유로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행위를 저지른 나라로서 명백히 패전국이다. 이런 면에서 일본, 독일과 한국의 경우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접수국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미군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정세에서 한국에서 미군의 위상과 성격은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억지력이 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은 침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북한 당사자들이 미국과 평화를 절실히 원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의 정직한 정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다. 왜 아직도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미국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면 우리를 주권국가로 존중하고 형사재판권을 포함해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군지위협정을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 2.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안의 취지—형사재판권 및 훈련관련 조항의 문제점

### 1) 형사재판권 분야

#### (1)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 계약자까지 특혜를 받음.

△ 장소적 적용 범위는 형법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좁아 주한미군 등이 일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이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예: 대구 미군기지 한국인 근무자 피살사건).

#### (2) 형사재판권

△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예: 이태원 미군아파트 세 모녀 폭행사건).

△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하여,

재판권 포기 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음(예 : 미군 장갑차의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압사사건).

△ 대한민국은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 (3) 수사협조

△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 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예 : 서정만 살해사건).

△ 사건 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페의자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어려움(예 : 여중생 압사사건).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 확인 이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4) 구금인도

△ 개정협정에 규정된 기소시 구금인도 원칙이, 12개 중대 범죄시에만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외가 됨.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이후 기소하더라도 구금할 수 없음(예 : 여중생 압사사건).

### (5) 재판진행

△ 송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미군 당국이 송달에 협력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예 : 맥팔랜드 사건).

△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미국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임.

###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예 : 아리랑 택시 기사 정양환 사건, 민중의 소리 기자 사건).

### 2) 훈련 분야

△ 독일보충협정 제45조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의한 토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훈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안전조치도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예 : 여중생 압사사건, 매향리 폭격피해사건, 파주 장파리 벼 피해사건 등).

### 3) 영어본 우선조항

△ 1991년 개정 양해사항에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2000년 개정시 영어본을 우선하는 것으로 개악됨.

### 3. 개정 방향

#### 1) 형사재판권 분야

##### (1)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 :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을 제외하여 나토,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 장소적 적용범위 : 주한미군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개정 : 본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 공무증명서가 다투어질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 이중 위험금지의 원칙 적용으로 추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결과 발생을 방지함 :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나)에 관하여 1.

▲ 재판권포기요청시한의 기산점을 서면통보일로 명확히 함 : 양해사항 중 제3항(다) 1.

## (3) 수사협조

▲ 모든 범죄 발생시 상호통보하도록 함 : 본협정 제22조 제5항(나).

▲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함 : 양해사항 중 제5항(다) 1.

## (4) 구금인도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5항(다) 2.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하면 계속구금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2.

▲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3.

## (5) 재판진행

▲ 소송서류 송달에 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의 연락기관을 이용하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2.

▲ 재판경과를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제6항(나)에 관하여, 제3항(나)에 관하여 3.(나).

▲ 정부대표참여없는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 2) 훈련 분야

### (1) 통보

▲ 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 (가), (나).

### (2) 이의에 대한 협의

▲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 (다).

### (3) 훈련실시와 중단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라).

▲ 합중국 군 당국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도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 협정 제24조 제1항(마).

#### (4) 토지 원상복구

▲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 협정 제24조 제2항 (가), (나).

▲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신설】 본 협정 제24조 제2항 (다), (라).

#### 3) 영어본 우선조항

▲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함 : 본 협정 제31조, 양해사항 중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 ※ 세부 개정 사항 ※

##### 1) 본 협정 중 개정사항(다음 페이지 표)

##### 2) 본 협정 제24조 [군사훈련] 신설

1. (가) 합중국 군 당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대한민국 당국과 군사훈련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범위의 지역주민대표에게 군사훈련에 관한 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 (다)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또는 기타 친척" 삭제)	나토, 미일협정은 기타 친척을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5조 제8항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del>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 사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del>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후략)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따라야 한다" 삭제).	초청계약자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없는 특례로,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22조 제1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del>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del> 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 및 대한민국에 관련된 기간 동안에 출국하여 일시 체류하는 합중국 및 제3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5조, 6조와 모순되고,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경우 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제22조 제5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del>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del> 계약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로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이 재판권을…경우에 있어서" 삭제).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상, 미군당국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사건발생 즉시 발생과 경과, 피의자 체포 여부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제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등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영어본 우선조항은 외국에 유례없으므로, 양국간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 (나) 위 계획에는 군사훈련의 실시일자, 장소, 종류 및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이용 여부, 공공안전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될 안전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 대한민국 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대표가 위 계획을 통고받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훈련내용 또는 실시일시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적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대한민국 당국 등에 다시 통고하여야 한다. 수정된 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합동위원회가 합당한 기간 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 (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합동위원회의 잠정 합의에 따라 수정계획에 따른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훈련의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당해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 (마) 합중국 군 당국이 위 (가) 내지 (다)항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군사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합중국 군 당국은 양국간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당해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의 실시로 인하여 훈련부지 또는 그 이동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원형이 크게 변형되거나 오염되는 등 그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합중국 군 당국의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재발방지 및 당해 토지의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토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다) 합중국 군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토지 사용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형대로 복구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라) 합중국 군당국은 통상의 군사훈련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 (다)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항 (나)에 관하여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형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밖에서 범행하고 돌아온 미군을 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삭제	대한민국 형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피해구제방법이 없고,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직위나 부직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공무증명서에 따라 재판권 귀속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미일협정과 같이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제한하여야 함.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삭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 (나)에 관하여 3. (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삭제	대한민국이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통보받고 입회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은 삭제 정리하고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신설하여야 함.

### 3) 본 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 (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당국의 수사·재판 가능성은 배제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 (다)에 관하여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에 체포한 경우와 그 외 어느 때이든지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중상해,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후략)	미군피의자가 일단 합중국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체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폭행 또는 상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상해의 경우도 범죄결과의 중대성이 비추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나쁜 강간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 (다)에 관하여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후략)	삭제	본 협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구금인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른바 12개 중대범죄에 한하여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신설 제6항 에 관하여 1.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어느 일방 국가 당국은 타방 국가 당국에 유선으로 그 발생일시와 장소를 즉시 통보하고, 타방 국가 당국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서면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보존, 공동 현장조사, 임의동행 협조, 즉각적인 수사 기록 송부 등의 구체적인 수사협조사항이 신설되어야 함.
제6항 에 관하여 2.	1.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정하는 연락기관에 송달될 경우 동 합의사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전속적 재판권 행사 시 비형사재판절차 상의 연락기관에 송달하도록 하는 미숙 협정의 예를 참작하고, 민사소송법상 송달규정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 형사사건 소송서류 송달을 원활히 하여야 함. ▼ 조문번호정리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항에 관하여3.	2…(후략)	3…(후략)	▼ 조문번호정리
제6항에 관하여4.	3…(후략)	4…(후략)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6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금 여부와 재판의 일시 및 장소 판결결과 및 혐의 집행 여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담해 범죄의 고소인, 고발인, 범죄피해자 및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며, 범죄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진행을 통보하고 범죄피해자등이 재판에 입회하도록 제3항(나)에 관하여 3.(나)를 삭제하고 여기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제7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7항 (나)에 관하여 2.		2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구금형의 감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등 대표가 철역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한다.(이하 삭제)	정부대표 입회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군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고 타국에 유례없는 것으로 삭제하여야 함.
제9항에 관하여 '(자)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제	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정지규정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출석 권리를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혜로 삭제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9항에 관하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감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제	미군의 위신을 이유로 심판거부권을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혜로 삭제되어야 함.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총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삭제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형사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독일, 일본과의 협정에 있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함.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를 체포 또는 유치할 경우 시설과 구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상태에 두어야 한다.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삭제	전속적 재판권 포기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정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후략)	삭제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p><b>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b>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b>합의의 재판</b>, 비사법적 징벌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하기 위하여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p>	공무증명서가 최초로…피의사실에 대하여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하기 위하여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	본협정 22조 8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을 정하는바, 공무여부 논란중에 합중국 군당국의 군사재판이 확정되면, 공무와 사건으로 결정되어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삭제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피해자등의 재판절차 참여를 정하면, 이 규정은 종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여야 함.
제3항(다)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하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시한의 기산일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통보받은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항(다)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후략)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시간은 합동위원회에서 미리 합의된 것에 따른다. 법적 대표의 권리는…(후략)	원활한 예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유치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 (다)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지 않더라도 협정 제22조 제3항(다)에 의하여 2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하여야 함.
제5항 (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이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전항과 같음.
제5항 (다) 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 전 구속”(“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후략)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후략)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 한다.	…작성되었으며, 본 협정 해석 또는 이해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사령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 4) 시설 기지 공여 결정의 문제점

-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의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으며,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은 제 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양정부가 이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내용 :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단체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경우 미국정부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미국은 그 요청에 응한다. 한미합동위원회구성에 각 정부대표외에 반드시 현시설 기지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도록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오키나와기지의 경우 거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제공되는 공여지조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수속절차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미군이 우리 시설과 땅을 장악할 때는 우리 정부에 통보정도수준에서 일원 한문 내지 않고 해결된다.

#### 5) 토지 사용료 문제 및 기지 임대료 문제

- 한미형협 5조 2항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향유할 권리 를 주고 있으며, 보상문제가 생길 때는 한국정부가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을 대신해서 보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모든 미군기지, 심지어 미대사관, 미문화원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행정협정 규정을 무시하고 용산 미군기지 약 8만 평의 가량의 터를 미대사관 직원 숙소와 위락시설로 불법사용하고 있다.

개정내용 : 일본과 필리핀처럼 시설과 구역의 무상공여에서 임대계약으로 기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리핀 사례 “1966년부터 25년간 효력을 지속 한다. 그 후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아니하면 양국정부 중 일방이 1년의 기간을 잡아 통지함에 따라 협정은 종료하게 된다.”

#### 6)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

- 행협 4조 1항은 미군의 시설이나 기지의 원상회복의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독일내 미군기지의 경우는 독일 환경법이 적용되고 있다.

#### 7)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제3조)

#### 8)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1991)

행정협정 5조 1항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에 반하는 잘못된 협정이다.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 9)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

기지를 포함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이전을 포함한 반환문제의 결정권을 미군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행협은 개정되어야 한다. 군사이전 각서도 미군의 규모에 따라 언제든지 미군에 의해서 일정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한참 잘못되어 있다.

### 4. 한국 법무부 주장에 대한 반박

#### 1) 한미 SOFA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공무집행증명서의 “효력 인정이 ‘일본 형사소송법 제 318조, 즉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반해, 그런 규정이 없는 “우리 SOFA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한 일본에서조차, “미군 당국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규정도 없고, 국가 간의 관계나 관료들의 태도, 실제 법 운용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예속적이고 소극적인 한국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한미 SOFA 도 일미 SOFA처럼 이 조항을 명문화해야 옳다.

#### 2) 경미한 범죄도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가 1차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안이 중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미 범죄에 대하여 사실상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독일 SOFA, 일본 SOFA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장만 할 뿐 독일과 일본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미한 범죄일수록 사건이 더 은폐, 왜곡, 축소, 조작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

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더 한이 맷힐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반미 감정을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설사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 하더라도 1차적 재판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 3) ‘미군 범죄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는 미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미측에 인도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SOFA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역 문제 때문에 그날 바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단 신원만 확인한 후 미측에 인계하고 후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군 범죄 용의자들은 거의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미군 당국이 용의자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기도 한다.

또 음주처럼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해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초동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SOFA조항을 개정하고 미군기지 주변 경찰관서에는 영어에 능통하고 통역이 가능한 수사관을 구성된 ‘미군범죄 수사전담반’을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 4) 미군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무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하고, 나중에 국가가 미국정부 또는 가해 미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국가간 결정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를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배상문제에 대해서까지 피해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불합리하다.

### 5) 미군은 환경 법령을 “존중”이 아니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개정 SOFA 제3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는 환경 규정이나 법률도 미군은 “존중”하고, 한국은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미군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SOFA 제7조에 따라 접수국인 한국의 법령을 “존중”하게 돼 있고, 지금도 그들은 한국법을 “존중”은 하고 있다.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뿐이다.

## ◆토론요지 6

###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과제

유기홍(개혁국민정당 정책위원장)

#### 1. 머리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과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분출하고 있는 국민적 저항은 과거와 전혀 양상을 달리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학생운동에 의해 선도적으로 제기되었던 “대등한 한미관계”的 명제가 9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령과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전국민의 폭발적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빈발하는 미군범죄 등 몇몇 사건을 계기로 한 일시적이고 정서적인 반발이라기 보다는 냉전시대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한미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각성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더라도, SOFA의 운용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근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 2. SOFA 재개정의 필요성

##### 1) SOFA 체결과 두 차례의 개정 경과

1962년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1966년에 최초로 체결된 SOFA는 전시체제하의 ‘주한 미국군대의 관할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정(소위 대전협정, 1950년 체결)’에 규정되었던 굴욕적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1960년대 한미간의 종속적

역학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불평등한 협정이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SOFA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991년에 1차 개정을 한 결과, 우리측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을 삭제하고,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등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비판여론과 전면 개정요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됨에 따라 다시 1995년부터 이 협정의 개정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미군 범죄피의자의 권리보호강화를 전제로 범죄인의 신병인도시기 조정에 국한하여 협상하려는 미국측 입장으로 인해 협상은 교착상태를 거듭하였다.

이후 SOFA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국회에서도 2000년 7월 'SOFA 전면개정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압력이 거세지자 우여곡절 끝에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2000년 12월 한미간에 제2차 SOFA 개정에 합의하게 되었으며, 2001년 1월 양국간의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 2) 2001년 개정 SOFA의 문제점

한미당국은 2001년 SOFA 개정을 통해 소파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새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여중생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전면적인 재개정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ㄱ) 일부 개정된 부분에 여러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 개정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살인·강간 등 12개 중요범죄 신병인도 시기를 기초시점으로 개정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법적 결정 등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있는 경우 등 '필요'가 있을 것 등의 단서조항을 두어 12개 중요범죄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이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계속구금권의 경우에도 ① 현행범 ②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③증거인멸, 도주의 염려, 피해

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가능성 때문에 구속할 필요 ④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없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국측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미군 범죄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계속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ㄴ) 포르말린 사건과 토양 오염 등을 계기로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선언적 성격이 강해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된 환경조항(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의 경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환경오염 시 원상복구나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역시 "주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라는 식의 선언적 문구에 머무르고 있다.

(ㄷ) 미국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개악된 부분도 있다.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며 '기소 후 한국당국의 불신문', '변호사 출두시까지 불신문 및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불사용', '형집행에 관한 미측의 특별 요청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 한국의 형사소송법과 배치되거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공여지가 침해된 경우 한국측이 침해 제거 조치를 취하고 미측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공여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고서도 그 공여지가 침해될 경우 한국측이 복구해주고 미군측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굴욕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 5천 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대물 교통사고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군에게 지나친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SOFA 재개정의 방향

최근 여중생사건을 계기로 한 국민적 요구는 사실상 대등한 한미관계로의 근본

적 변화를 전제로 한 전면적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은 역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의 개정이 아닐 수 없다. 자국의 영토 내에서 자국의 법률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주권의 포기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권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일본이나 나토 수준으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 소파 역시 일본 내에서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나 한-미 소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인적 적용범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일 소파의 적용대상은 ‘합중국 군법에 따르는 자’에 국한된 반면 한미 소파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기타 친척’으로까지 적용범위가 넓다. 이는 ‘민간인에 대해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1960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는 미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최소한 미일 소파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속적 재판권 포기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미일 소파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의 예에서 보듯,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군 법정에서의 무죄판결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 등 형사사건의 일반적 조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구금 인도’, ‘재판 진행’, ‘미군의 한국인 체포’에 있어서도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 등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하며, 훈련 분야에 있어서도 훈련계획의 통보 및 이의에 대한 협의, 토지 원상복구 등 국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과 직결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차이가 있을 때, 영어본을 우선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 SOFA의 뿌리, 한미상호방위조약

앞서 지적한대로 소파 재개정 요구는 단지 여중생사건을 계기로 한 일시적·정서적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탈냉전시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걸맞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바라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파의 개정을 넘어 궁극적으로 냉전시대 미국의 대소 전진기지로서 한반도가 위치지워졌던 시절의 유산인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야말로 소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 10월 1일 조인되어, 1954년 11월 17일 비준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대한 미국측의 전통적인 설명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대미의존은 구조화되었고, 이 조약의 영향으로 한국전쟁 중에 미군에 이양된 한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등이 휴전 이후에는 물론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도 여전히 미군이 장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태로서 1954년 한미합의 의사록, 1966년 한미 주둔국 지위협정(SOFA), 1991년 한미 전시지원협정이 체결되어 한미 간의 불평등성은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른다. 결국 소파의 불평등성은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불평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내용에서 조약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불평등을 법제화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조약 5조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단서로 어느 일방에서 조약의 정지를 하려고 할 경우 1년 전에 통고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 필리핀, 일본은 각각 25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안보상황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토 기지공여주의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필리핀, 일본과는 미군기지를 지도를 첨부하면서까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조약 4조에 의해 한국의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토주권의 포기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우리의 모든 국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주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 2) 한미상호방위조약 재검토의 조건 성숙

그러나 이제 변화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북관계의 개선,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는 최근의 정세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공산주의의 위협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한국은 이미 중국·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동맹을 설정할 당시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위협이 현저히 사라졌을 경우 동맹의 형식과 내용은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국가이익을 보호할 새로운 안보수단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동맹을 결성할 당시의 위협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경우 동맹의 가치는 약화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벗어나 남북의 공동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안보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미종속적인 안보구조를 21세기까지 연장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북미관계 증진으로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북미관계가 증진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나 폐지는 불가피하게 된다. 조약 전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공통의 결의를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약체결 시점이 1953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란 주로 북한을 상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주둔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화유지군은 중립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므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소파 개정에 조차 소극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는 현재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곧 미군 철수의 요구로 확대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의 한 가운데서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던 조약과 협정들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조건이 성숙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과 주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의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소파 개정과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4.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관련해, "소파는 한미 상호간에 유익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해 소파 개정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는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이준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소파는 2년 전에 개정됐다"며 "소파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의정부 사건을 꾀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우리의 소파 개정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인식을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여중생사건을 계기로 한 이번 개정 요구가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일부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의 관심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한미 정부의 역학관계에 따른 미봉적인 타협 정도로 이번 일에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협상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화문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더 이상 소파개정운동이 동원형 운동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민주주의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개혁당의 김원웅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57명이 제출한 「불평등한 SOFA 재개정 촉구 국회결의안」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통령 후보의 정략적인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유력 대통령 후보 전원이 소파 개정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앞서 말한 국민적 참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통령선거 이후 이러한 약속에 따라 소파 재개정을 위한 협상에 정부와 정치권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후 바람직한 한미관계 형성을 위한 더욱 발전적인 동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각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소파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대선 시기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각 정당과 후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국민들 앞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 협의기구는 시민사회측의 범대위와 협력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 정부와도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파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재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02. 12. 9.

발의자 : 김원웅·송영길·김근태  
김덕규·장성원·이창복  
김경천·박명환·이미경  
원희룡·심재권·김희선  
김경재·이종걸·김성호  
정동영·이호웅·조한천  
천정배·김태홍·김화중  
윤철상·정범구·임종석  
김충조·정진석·김홍신  
이재정·원유철·김명섭  
서상섭·배기운·정장선  
이해찬·신계륜·신기남  
윤두환·서청원·장영달  
박인상·이근진·김영환  
정대철·김성순·김영춘  
송광호·허운나·송석찬  
추미애·정의화·남경필  
박병석·남궁석·김옥두  
이낙연·권오율·이주영  
의원(57인)

## 주 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한다)은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현저하게 불평등하며, 우호적인 한미관계에 많은 장애가 되어 왔다.

작년에 미국은 한국 국민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리어 가시적인 개정을 하였지만,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요구한 형사재판관할권 이양문제를 여전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등 평등한 한미관계형성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더욱이 지난 11월 25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군당국이 과실치사로 기소했던 주한미군 피의자 워커 마크와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미군측의 군사재판 결과, 2명의 피의자 모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또한 미군 지휘관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미군측이 내린 이번 재판결과는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판결과다. 특히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법집행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자국민이 사망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사법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받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전적으로 미군측이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없이는 신효순, 심미선양 사건의 재판결과처럼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제2, 제3의 부당한 재판결과를 양산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재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부시 대통령의 사과가 성의없는 메시지의 전달에 그쳤고, 구체적 후속 조치의 표명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직접 공식 사과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평등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

한다. 특히 공무상 발생한 중대한 범죄와 비록 공무중이라도 공무목적이 아닌 범죄에 있어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은 훈련시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군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해야 하며, 미군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국이 독일, 일본 등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 함.

이번 11월 25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미군들에게 내려진 미군측의 무죄평결은 법리상 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한국국민의 인권을 경시한 법 집행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어 자국민이 사망한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미군측이 내린 무죄평결재판은 무효라며, 한국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미군측의 그동안의 태도에서나 최근의 법정 판결의 결과는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강대국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음.

따라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조항에 한국 주권과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을 과감히 삭제해야 하며, 최소한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SOFA협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개정 해야 할 것임.

이에 우리는 미군측이 형사재판권이양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